

영등포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3.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21호로 2016년 2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신길제11구역 재개발에 따른 부지내 래미안프레미뉴 아파트가 12월말 준공됨에 따라 사업부지내 신길5동 일부지역이 신길3동으로 편입되어 동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 당산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동주민센터’ 약칭 삭제 (안 제1조)
- 나. ‘동주민센터’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로 풀어씀 (안 제2조)
- 다. 동주민센터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변경 (안 제2조 별표)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동주민센터의 구역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신길동 329-94 일대에 위치한 신길11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어 공동주택(래미안프레미뉴 아파트)이 2015년 12월말 준공됨에 따라, 주민 생활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일부 포함된 신길5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을 신길3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구역 변경도 별도 첨부)
- 또한, 노후 되고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였던 당산2동 주민센터 청사를 폐쇄하고, 공공 기부채납 토지에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다목적강당 등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2015.11.30.부터 개청 하였는바, 이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 하려는 것임.
- 그 외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 ‘동주민센터’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로 하여 명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